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5. 10. 27.
행정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5년 10월 22일 차재홍 의원 외 7명
나. 회부일자 : 2015년 10월 27일
다. 상정일자 : 제199회 임시회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2015년 10월 27일)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 백남환 의원

가. 제안이유

어린이놀이시설을 어린이들에게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의 의무사항과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내용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조례 제정 목적 규정(안 제1조)

2) 어린이놀이기구 및 시설 등에 대한 용어의 정의(안 제2조)

3) 관리계획 수립 및 행위의 제한사항(안 제3조, 안 제4조)

4) 안전감시망 구축 및 안전관리 의무이행(안 제5조 및 안 제 6조)

5) 업무의 분담 및 관리 감독(안 제7조 및 안 제 8조)

6) 안전점검 및 결과의 조치 등(안 제9조)

7) 예산확보 및 표창 등(안 제10조 및 안 제11조)

3. 검토보고 (전문위원 김은모)

○ 본 조례안은 최근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가 강화되고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등 관리주체의 의무 사항과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의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시설관리와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이바지하고자 제출하는 것임.

○ 동(同) 조례는 제1조 목적에서 부터 제11조 시행규칙까지 본문 11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주요 내용으로는

가. **안 제1조~안 제2조**에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제정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나. **안 제3조~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하고, 구청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순찰 등을 실시하고 흡연, 음주, 가무 등 금지사항에 대한 위반 시에는 퇴장 명령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

다. **안 제5조~안 제6조**에서는 안전감시망 구축을 위해 개인 및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활용할 수 있음

라. **안 제7조~안 제8조**는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 설치장소에 따라 관련 해당 업무부서가 업무를 분담하고, 업무부서에서는 관리주체가 어린이

놀이시설을 안전하게 유지·관리하도록 관리·감독해야 함

마. **안 제9조**에서는 구청장은 관리주체에게 안전점검 실시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 할 수 있으며, 안전점검 결과가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를 명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음

마. **안 제10조~안 제11조**는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 관리계획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 안전 환경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및 관리 실태 점검 결과 실적이 우수한 개인 및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본 조례안은 2015.10.22.~10.26.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상위법에 대한 저촉여부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주체의 안전점검, 유지·관리 등 의무사항과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의 내용을 보다 체계적이고 명확히 함으로써 효율적인 시설관리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우리 구 어린이 놀이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9월 말 현재 335개의 어린이 놀이시설이 있으며, 설치장소가 도시공원 52개소, 주택단지 238개소, 식품접객 2개소, 아동복지 2개소, 어린이집 40개소와 놀이제공 업소 1개소로 대부분이 주택단지 내 위치하고 있으며 주택단지는 대부분 공동주택 단지로 구(區)에서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지도감독을 하고 있으나, 그 밖에 놀이시설의 경우는 관리주체에서 시설물을 자체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어 전문적인 관리가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어린이 놀이시설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안전점검 및 관리가 필요한 실정임

○ 또한 최근 자주 발생하고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사고의 원인을 보면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에만 중점을 두고 설치 이후 관리는 소홀히 하여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으로 관리주체의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의무 규정을 마련함은 물론 구청장은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확보 및 관리감독에 대한 의무 규정 등을 두도록 하고 있는 이번 조례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관리대책에 대한 조례 제정으로 어린이들의 안전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사항 : 없음